

제 2 장 일반적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라 함은 양 당사국 간의 이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APEC이라 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말한다.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국내법에서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
- 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싱가포르 헌법 및 국내법의 의미에서 국민인 자

관세평가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를 말한다.

날이라 함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날을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조직되는지 여부, 민간 또는 달리 소유되었는지 여부, 또는 유한 또는 무한 책임을 지도록 조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구성·조직 또는 달리 적법하게 조직된 주식회사·회사·조합·합명회사·신탁회사·합작투자기업·개인기업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실체와 그 지사를 말한다.

기존의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 당시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 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라 함은 수입·지출·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와 재무제표의 준비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은 세부 기준·관행 및 절차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라 함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류의 주를 말한다.

조치라 함은 법률, 규정, 절차 또는 행정행위, 요건 또는 관행을 말한다.

공민이라 함은 당사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말한다.

영주권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당사국의 공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영역이라 함은,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그 주권 하에 있는 육지·해양 및 영공,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국제법에 따른 그 육지영역 및 영공, 내수 및 영해, 그리고 싱가포르공화국이 그 지역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목적으로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영해 밖의 해양지역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